

2019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3차 지원사업 공고

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거하여 『2019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3차 지원사업』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6월 17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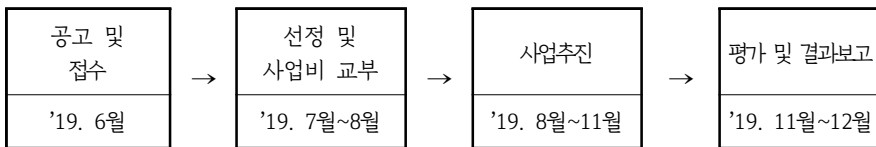
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

1 사업개요

- 추진목적 :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가치증진을 위한 지원사업
- 총사업비 : 540,000(천원)
- 지원 단체 자격¹⁾
 - 경기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 - 경기도내 31개 시·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
- 사업추진기간 : 2019. 8. 19 ~ 2019. 11. 10
- 공모분야(2개)

구 분	소외계층지원자원봉사	사회문제해결
사업비	500,000(천원) *김장지원자원봉사 포함	40,000(천원)
단체별 신청액	~ 5,000천원(1개 단체 1개 사업지원)	

- 추진 절차



1) 4의 지원 제외 대상 참조

2 신청서 및 제출서류

구 분	상세내용	
공고 및 접수기간	2019. 6. 17(월) ~ 2019. 6. 28(금)	
제출 서류	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(경기도지사로부터 발급)	① 자원봉사단체등록증 (경기도내 시·군자원봉사센터 발급)
	② 신청서(서식1) ③ 사업계획서(서식2) ④ 단체현황(1년이상 봉사활동실적 필수)(서식3) ⑤ 회원명부(대표 및 회원 포함 10인이상 필수) ⑥ 개인정보활용동의서(서식4)	
접수마감	~ 2019.6.28(금), 18시까지	
접수방법	이메일제출(ggvc2561365@hanmail.net) 파일명 : 3차 도전지원사업 신청(단체명)	
문 의 처	★ 미비서류제출단체는 자동탈락(날인필수) 서식)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ggvc.or.kr)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-256-1365(내선600~604)	

3 선정단체 제출서류(*선정발표 이후 교부신청시 제출)

구 분	상세내용
제출 대상	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★선정된 단체
제출 서류	① 교부신청서 ② 변경계획서 ③ 사업계획서 ④ 이행보증보험증권 ⑤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⑥ 고유번호증

4 유의사항

- 자부담은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해야 함
- 자부담은 보조금액의 10%이상 책정 필수이며 미 이행시 반납 및 선정취소 될 수 있음
- 선정된 단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행사에 필참 하여야 함
- 사업 진행 시,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업종료 1달 전까지 승인 필수
- 선정된 이후에 추가 요청 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
-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·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음 등
- 선정된 단체는 기한내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, 기한초과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5 지원 제외 대상

- 전년도 최종평가 「하」, 「부적격」 및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
- 금년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공모사업 1·2차 선정단체 및 교부 후 포기단체
- 지원단체의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취소된 단체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사대상에서 제외
-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
- 이미 중앙부처·도·시군(소속 공공기관 등 포함)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
- 소외계층 주거 환경개선 및 고치기 사업
- 자산성 성격(사무집기, 컴퓨터, 프린터기, 악기, 가구 등) 지원 사업
- 해외자원봉사활동 및 해외네트워크 사업
- 단체의 정기총회, 특정정당 및 종교단체 등의 사업
- 사업성격, 수혜대상의 불분명하거나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
- 자체자원 또는 봉사자가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또는 인건비가 계상되는 경우
- 술, 담배와 같은 불필요한 것을 구입하여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등

6 선정결과 발표

○ 2019. 7월중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(<http://www.ggvc.or.kr>)

- ※ 심사위원회('19. 7월중 개최예정)를 거쳐 최종 발표
- ※ 최종 교부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
7 기타 사항

- 구체적인 예산항목 편성(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)
산출근거(단가×수량×회수=금액(원단위) 등)를 제시
- 모든 지출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
- 승인절차 없이 진행한 경우 사업비 환수조치
- 서식)경기도자원봉사홈페이지 <http://www.ggvc.or.kr> 공지사항 활용
- 자세한 사항은 선정단체 교육 시 안내 예정

[사업비 편성 항목 참조]

내 용	
사업비 편성	- 재료, 문구류(교육, 공예 등 만들기, 김장재료, 사진인화, 등) - 현수막·전단지(리플렛)·포스터·인쇄비만 가능 - 강사비 등(단체의 소속인 지급 불가) - 장소사용료, 버스 임차비, 자원봉사상해보험 - 운반비, 우편료, 송금수수료 - 비상약품 등
	※ 참고 -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편성 가능 - 식사비(1인 8,000원) / 간식비(1인 3,000원) * 1일 8시간 이상 활동 시 식사 가능 - 소외계층지원 자원봉사 분야에 김장사업 포함

[편성불가 항목 참조]

내 용
- 자체 진행 회의비 및 인건비 등 불가 - 비품(1년이상 사용)과 자산성 성격의 물품은 구입불가 - 홍보물품(usb, 물티슈, 볼펜 등) 제작 불가 - 사전 답사(여비), 출장비, 유류비, 활동비, 예비비등 - 포괄적인 예산항목 편성불가(업무추진비, 예비비, 잡비, 기타비 등) 등